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06 발의연월일: 2024. 11. 15.

발 의 자 : 김 윤 · 서미화 · 박해철

박희승 • 박홍배 • 윤종오

문진석 · 정혜경 · 이광희

박지원 • 문금주 • 전진숙

이개호 • 전종덕 • 강준현

김남근 • 남인순 • 백혜련

이수진 · 장종태 의원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의료기관과 관련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 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그 일몰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특히, 지방의료원에 대한 조세특례의 취지인 지방의료원 운영을 통한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은 지방세 세제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임.

지방의료원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아야 하며, 수익성이 낮아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 취약성을 고려할 때 지방세 특례 적용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	제38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
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면)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	
립된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	
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	
다.	
1. <u>2024년 12월 31일</u> 까지 취득	1. <u>2025년 12월 31일</u>
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	
(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85)를 각각 경감한	
다.	